



가족 모두의 행복 가족센터에서 시작합니다.
가족결에 가족센터



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근거하여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 체계로서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전국에 244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1. 건강가정기본법

법 제 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법 제 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 35조의 2 (가족센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

법 제 6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법 제 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221개	14개소	9개소



대표 홈페이지 www.familynet.or.kr

가족 교육

나와 가족이 함께 받는 가족 교육

가족구성원의 잠재적 강점 기능을 발현시키고 역량을 강화하는 가족 교육을 생애주기별로 실시하여,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의 관계개선을 통해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명	사업 내용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 예비 신혼기 부부,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포함한 생애주기별 (초)부모교육 - 예비부모·부모대상 고비용 혼례 교육
아버지 교육	아버지 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자기돌봄 교육 등
신혼기 가족 교육	- 출산준비교실 - 공동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신혼기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중년기 가족 교육	중년기 가족생활교육, 가족경영아카데미 부부관계 증진 교육, 의사소통 교육 등
노년기 가족 교육	노후준비교육, 은퇴설계교육, 노인대상, 자기돌봄강화 프로그램 등
자녀 대상 교육	독서아카데미, 창의력 교실, 진로교육 폭력예방 교육, 예절교육 등

* 전국 센터별로 프로그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족 상담

가족에게 닥친 어려움을 전문 상담가와 함께 해결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인 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 등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건강을 키워드립니다



프로그램 명 사업 내용

- | | |
|-----------|---|
| 부부상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부의 관계 갈등, 의사소통, 부부성격 및 가치관 차이, 외도, 배우자의 의심, 부부 성문제 경제문제 등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담 |
| 부모-자녀상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자녀간 관계 갈등, 자녀양육문제, 자녀 성격 문제, 자녀 비행·일탈·따돌림 등 부모-자녀간 발생하는 문제 상담 |
| 그 외 가족 상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제 자매 갈등, 원가족 갈등 등 부부와 부모-자녀간 외의 다른 가족들로부터 발생하는 가족문제 상담 |
| 개인 상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 우울, 대인관계, 외상 후 스트레스 등 개인문제 상담 |
| 가족(집단)상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상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 접근과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단위 통합적 접근을 포함 |

가족 문화 프로그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

가족 문화는 가족단위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가족과 연령층을 고려한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양성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날 운영

매주 수요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가족친화문화 프로그램

가족캠프, 가족체험활동 등 가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가족봉사단

2인 이상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공동육아니눔터

이용대상: 부모 등 보호자 및 자녀

이용방법: 방문참여

이용시간: 월~금 10:00~18:00 *지역여건에 따라 상이
지원내용: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공간 제공, 돌봄품앗이를 구성하여 이웃간 양육정보 교류기회 제공, 자녀 성장발달을 돕는 놀이, 문화·체험활동 등 그룹돌봄활동 지원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돌봄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지원사업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 지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가족생활 지원을 통한 사회적 자립을 위해 다문화가족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및 정보제공 한국어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 지원대상

- | | |
|--------------------|--|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 한국교육서비스: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 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방문 부모 교육서비스: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결혼 이민자 자녀생활서비스: 3세~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또는 중도입국자녀 |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평가 및 언어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12세 이하) |
|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 외국인, 난민 가족 다문화가족, 외국인 난민 가족을 작간접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 이중언어 교육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 결혼 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 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
| 기초학습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취학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외국인·난민 가족 자녀 |
| 진로설계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세~24세 다문화·외국인·난민 가족 자녀 |

아이돌봄서비스

양육공백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지원 시간
영아 종일제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월 200시간
시간제 (기본)	등하원 보조, 임시보육 놀이 활동 등	생후 3개월 ~ 만 12세	연 960시간
시간제 (종합형)	기본형+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생후 3개월 ~ 만 12세	연 960시간
질병 감염 아동	아동의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으로 가정 양육 필요시 서비스 제공	생후 3개월 ~ 만 12세	선택사항
기관 연계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등 기관에 찾아가 돌봄제공	생후 3개월 ~ 만 12세	

신청 절차

- ①정부지원신청(읍·면·동사무소 방문 및 복지로신청)→
②국민행복카드발급→③아이돌봄 홈페이지가입 및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www.idolbom.go.kr

☎ 서비스 문의 1577-2514

온가족보듬사업

가족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

다양한 가족이 가족의 건강성을 되찾고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가족 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취약가족)
재난, 사고 등 위기 사건을 직면한 위기 가족
1인가구 및 면접교섭 이용가족 등

지원 내용

가족상담

생애주기별 다양한 갈등 상황을 경험중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되,
긴급위기 가족의 경우 우선적 지원 부부 상담, 부모·자녀 상담,
임신·출산 갈등 상담, 이혼 전·후 상담 등을 지원하며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 제공

가족사례관리

취약·위기 가족의 다양한 문제 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가족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지원과정 ①대상자발굴→②조사상담→③사례관리등록→④욕구및강점사정→⑤서비스계획→
⑥서비스제공→⑦서비스점검→⑧서비스평가→⑨서비스종결→⑩사후관리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가족관계향상, 가족돌봄, 자조모임 등 가족간 유대감 형성을 위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긴급위기지원

긴급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지원 및 긴급돌봄 등 지원

이용방법: 전화·방문상담·온라인상담·기관의뢰



전국가족센터 이용안내



www.familynet.or.kr



대표 전화
1577-9337